래미안 에버하임 입주자모집공고

來美安
래 미 안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 제도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하시기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의왕시 도시 주택과 – 10049호(2009.4.2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득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2번지(구 630번지 외)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3층, 지상25층 10개동 696세대 중 아파트 일반공급 154세대(의왕내손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급세대 중 일반공급분)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14세대, 3자녀 특별공급 4세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24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전용면적)	가구별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	계약면적	옛 주택형표기(전용+주거공용)	세대별 대지지분	향별구분	층별 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금액	계약금 5% 계약 시	중도금 5% 09.06.22	잔금 90% 입주 시
민영주택	22145-01	2009-000231(01)	59.7300(A)	20.0670	28.5640	48.6310	108.3610	79.7970	31.22	남동향	1층	1	154,398	126,202	280,600	14,030	14,030	252,540
											2층	2	159,350	130,250	289,600	14,480	14,480	260,640
											3,4층	4	164,302	134,298	298,600	14,930	14,930	268,740
											기준층	22	165,953	135,647	301,600	15,080	15,080	271,440
										남서향	1층	1	152,747	124,853	277,600	13,880	13,880	249,840
											2층	1	157,700	128,900	286,600	14,330	14,330	257,940
											3,4층	4	162,652	132,948	295,600	14,780	14,780	266,040
											기준층	7	164,302	134,298	298,600	14,930	14,930	268,740
	22145-02	2009-000231(02)	59.7500(B)	20.0430	28.5730	48.6160	108.3660	79.7930	31.22	남향	1층	2	154,395	126,205	280,600	14,030	14,030	252,540
											2층	1	159,347	130,253	289,600	14,480	14,480	260,640
											3,4층	3	164,299	134,301	298,600	14,930	14,930	268,740
											기준층	33	165,950	135,650	301,600	15,080	15,080	271,440
	22145-03	2009-000231(03)	84.7600(A)	23.1060	40.5340	63.6400	148.4000	107.8660	42.21	남동향	1층	3	234,471	194,129	428,600	21,430	21,430	385,740
											2층	4	241,856	200,244	442,100	22,105	22,105	397,890
											3,4층	8	249,187	206,313	455,500	22,775	22,775	409,950
											기준층	4	251,648	208,352	460,000	23,000	23,000	414,000
										남서향	1층	2	232,009	192,091	424,100	21,205	21,205	381,690
											2층	2	239,394	198,206	437,600	21,880	21,880	393,840
											3,4층	4	246,725	204,275	451,000	22,550	22,550	405,900
											기준층	15	249,187	206,313	455,500	22,775	22,775	409,950
	22145-04	2009-000231(04)	84.6800(B)	23.3990	40.4950	63.8940	148.5740	108.0790	42.29	남향	1층	5	234,547	194,053	428,600	21,430	21,430	385,740
											2층	7	241,935	200,165	442,100	22,105	22,105	397,890
											3,4층	8	249,282	206,232	455,500	22,775	22,775	409,950
											기준층	2	251,731	208,269	460,000	23,000	23,000	414,000
	22145-05	2009-000231(05)	116.0700	24.3060	55.5070	79.8130	195.8830	140.3760	54.93	남향	1층	4	317,865	293,635	611,500	30,575	30,575	550,350
											2층	1	327,638	302,662	630,300	31,515	31,515	567,270
											기준층	1	350,354	323,646	674,000	33,700	33,700	606,600
	22145-06	2009-000231(06)	120.2600	23.9490	57.5110	81.4600	201.7200	144.2090	56.43	남동향	1층	3	332,241	307,659	639,900	31,995	31,995	575,910

▣ 일반 · 특별분양 공통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 된 주택(2009.03.31)으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3 의거)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의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당첨된 동호수는 당첨자에 한해 2009.5.16(토)~2009.5.17(일) [10:00 ~ 18:00시]에 관람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가격이며, 세대별 분양가격은 층별, 향별, 개방감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오니 샘플하우스 또는 배포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 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샤시 및 발코니 확장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층 · 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중도금 납부일자 이전 입주예정인 분은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만 입주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무주택 세대주)
• 특별공급세대 : 전용 85㎡ 이하 공급규모 145세대의 10% 이내로 총 14세대

구 분	59.7300㎡	59.7500㎡	84.7600㎡	84.6800㎡	116.0700㎡	120.2600㎡	계
공급 세대(수도권)	4	4	4	2	0	0	14

▣ 특별공급(국가 유공자 등) 대상자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 시(배우자포함)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무주택 세대주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4.29)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람.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도장

• 특별공급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처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처리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 4. 29)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분양함.
• 청약예금가입 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3자녀 특별공급「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3자녀 특별공급 세대

구분		59.7300㎡	59.7500㎡	84.7600㎡	84.6800㎡	116.0700㎡	120.2600㎡	계
공급 세대	경기도 의왕시	1	0	1	0	0	0	2
	수도권	0	1	0	1	0	0	2

• 3자녀 특별공급 세대 : 일반공급 총 154세대중 3%인 4세대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는 당해지역(경기도 의왕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일반공급:특별분양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중복 청약 및 당첨자 처리 기준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부적격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순위 배점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 시 동점자 처리(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100			
자녀수(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인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3자녀 특별공급 신청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 시(배우자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4.29)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람.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5. 7. 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구 분	59.7300㎡	59.7500㎡	계
공급 세대(수도권)	12	12	24

◇ 신청자격 및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4.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이하이어야 함.
[전년도(2008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3,894,709원, 120% : 4,673,651원]
① 4인 세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 4,276,642원, 120% : 5,131,970원
② 5인 세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 4,384,491원, 120% : 5,261,389원
③ 6인 이상 세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 5,188,104원, 120% : 6,225,725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근로에 종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규칙 제4조, 제10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수도권은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되, 동일 순위내에서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 선정방법
①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2.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3.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주택공급신청자 중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도권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2항의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하여 산정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 시 (배우자 포함)		•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단,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청약통장가입확인서(청약통장가입 해당 은행에서 발급)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해 당 자 격		내 용	발 급 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자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여명세표(직인 날인) 또는 근로 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람.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4.29)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의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특별공급 공통 사항[특별공급(국가 유공자 등) /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 특별공급 추첨 순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 2, 3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신혼부부 보금자리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삼성물산㈜ 의왕 래미안 에버하임 분양센터로 방문 신청[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2번지(구 630번지 외) 연락처 031-424-3320]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9.05.04(월) (10:00 ~ 14:00) / 삼성물산㈜ 의왕 래미안 에버하임 분양센터[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2번지(구 630번지 외) 연락처 031-424-3320]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9.05.04(월) (15:00) / 삼성물산㈜ 의왕 래미안 에버하임 분양센터[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2번지(구 630번지 외) 연락처 031-424-3320]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일내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4.29) 현재 경기도 의왕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의 동포) 및 외국인포함】
※ 단 의왕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동일 순위 내에서는 의왕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경기도 의왕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경기도 의왕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경기도 의왕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치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 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전용면적)	청약관련 입주자저축 및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 /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신청자격	• 가점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되고 2순위 청약은 불가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경기도 의왕시 및 수도권	2009. 5. 6(수)	• 접수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 : 00 ~ 17 : 30	• 일시 : 2009. 5. 15 (금) • 장소 : 당사 분양센터 및 래미안 홈페이지 • 파이낸셜신문에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1980. 08. 29 이전 국민은행(舊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 05. 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102㎡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1순위가 되신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가점제 / 추첨제 신청자격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9. 5. 7(목)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9. 5. 8(금)	• 접수장소 : 신한은행 홈페이지 (www.shinhan.com) • 접수시간 : 08 : 00 ~ 17 : 30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1, 2순위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 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함.(창구 접수시간 09:00 ~ 16:00)
• 3순위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신청 및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청약가능함.(창구 접수시간 09:00 ~ 16:00)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 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 초과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 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 94. 08. 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2)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2007. 09.01 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가 점 제	75%	50%
추 첨 제	25%	50%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 점 항 목	가 점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 점	84	–				
비 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 제3항, 제12조 제3항, 제5항, 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산정기준' 참고)						

◇ 감점 산정기준

감점항목: 구 분	기 준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청약신청접수 방법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특별공급[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3자녀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분양센터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경기도 의왕시 및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경기도 의왕시 및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 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 대상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 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 청약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청약신청
	– 3순위 청약 :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접속 ⇨ 자산관리 & 재테크 ⇨ 부동산 ⇨ 3순위 청약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은행 창구 방문 청약신청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 신한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서명 • 배우자가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제3자 대리신청 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평형	신청금납부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비서류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09.05.16(토)이후 (평일 09:00~16:00) ※ 토/일 공휴일 제외	청약접수한 신한은행 영업점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 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 환불 시	◇ 상기 환불 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구비 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시 신고한 환불계좌에서 출금하여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 아래와 같이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를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구 분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특별공급	• 2009.05.04(월) (15:00) 당사 분양센터에서 특별공급 신청자의 입회 하에 동 · 호수를 결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과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공 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 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경기도 의왕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당사 분양센터에 별도 공고함.

■ 인터넷 및 ARS 당첨자 발표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 민 은 행	금 융 결 제 원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 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09.05.15(금) ~ 05.24(일) (10일)	
전화(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 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전화 1588-9999 (서비스 코드 701)	전화 1369 (서비스코드 5#)
	이용기간	2009.05.15(금) ~ 05.24(일) (10일)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9.05.15(금) ~ 2009.05.16(토)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계약체결안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대 상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장소	비 고
정당 당첨자	2009.05.20(수)~ 2009.05.22(금) (3일간) 시간 : 10:00 ~ 16:30	당사 분양센터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됨.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용) 1통 • 인감도장 • 계약금(수도권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 초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④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의 경우에 한함) ⑥ 주택소유현황 서약서(분양센터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②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③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④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여(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③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란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②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됨.
• 3자녀 특별공급당첨자 중 다음에 해당될 경우 향후 특별공급 자격박탈 및 일반청약 자격이 제한됨.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당첨취소와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샘플하우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준공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독서실, 보육시설,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판단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 (※ 장기간 보유특례)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 · 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입주예정일
• 2009년 5월 20일 ~ 10월 31일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

■ 유의사항
1. 청약 시 신청한 내용과 민영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창구청약자 :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2.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3.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및 계약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순위가 제한됨.
5.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서명)은 신청자의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은행 직원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7.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8.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9.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10.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함.
11.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2.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13.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14. 샘플하우스 내에 시공된 제품은 "같등"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으로 시공 중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15.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16. 샘플하우스는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국토해양부 주관 30145-26905)에 의거 임의로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샘플하우스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토록 함.
17. 대지 인접 도로의 통행차량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대관협의 시 필요에 따라 단지주변에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18.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19.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20. 홍보물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 및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현장을 방문하시어 최종 실시공된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21. 본 사업은 같은 평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공급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22.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향, 층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23. 단지 남측 부분의 근린공원은 의왕시의 시설물이며, 조성계획안 및 설치일정 등은 의왕시의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4. 신발장, 붙박이장 및 주방가구를 제외한 가구, 소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부적인 품목의 설치 여부는 공급계약서의 별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25. 포일지구 기반시설 공사로 인해 입주 후 기반시설 공사 완료 시까지 분진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합간 이견이 발생 시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사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 부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명
▣ 사업주체명 : 의왕내손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번호 : 135271-001045)
▣ 시공업체명 : 삼성물산㈜ 건설부문(주택건설지정업 지정번호 제48호)

■ 분양센터 및 샘플하우스 안내
▣ 현장 샘플하우스 위치 및 분양안내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2번지(구 630번지 외) 의왕 래미안 에버하임 분양센터 [☎ 031-424-3320]
▣ 샘플하우스 오픈일정 : 2009.04.30(목) ~ 2009.05.08(금) (시간 : 10:00 ~ 18:00)
▣ 분양센터 오픈일정 : 2009.04.30(목) ~ 2009.05.31(일) (시간 : 10:00 ~ 18:00)

문주

단지전경

시행사 의왕 내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SAMSUNG 삼성물산 건설부문

분양문의 031)424-3320 | www.raemian.co.kr